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07월 09일, 이기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07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7) 상정, 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9. 0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기현의원)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 6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u>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u>
6.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조¹⁾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종합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전문인력 육성,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10조²⁾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에서 ①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등의 이동성 향상 및 문화여가 향유 수준 개선 등을 위한 가로 환경 및 시설 공간을 조성하고, ② 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웹사이트 등의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추진 전략으로 세우고 있음.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법 제1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장애 유무, 나이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시설·정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다만, ‘사회적 약자’ 용어와 관련한 입법례에서, 해당 용어를 별도의 예시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³⁾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 대상을 예시로 함께 규정하는 방식⁴⁾이 있음

3) 「발명진흥법」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부금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로,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는 현행법 제10조의 원칙에 따라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위원장)

원안가결

6. 심사결과

원안의결

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만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7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노령자·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u>
	<u>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u>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